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4. 11. 26 ~ 12. 4 (7박 9일)

출장지: 독일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프랑스 파리, 보르도

출장자: 송하승 책임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전은선 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독일(슈투트가르트, 베를린) / 프랑스(파리, 보르도)

2. 출장기간: 2014. 11. 26(수) ~ 12. 4(목), 7박9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송하승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연구원	전은선	

4. 출장목적

- ☐ 수행중인 과제'산지전용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공익가능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 연구'에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산지전용, 산림경영 등의 관련 제도를 조사하여 그 시사점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 ☐ 이를 위해, 산지전용과 산림경영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담당자 면담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시행제도의 체계 및 운용 실태 등을 조사함

II.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장소	주요 수행업무	관계자
11.26(수)	인천 (13:35)	프랑크푸르트 (17:40)	-	■ 프랑크푸르트~슈투트가르트	-
11.27(목)	슈투트가르트		MLR (Ministry for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산림부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산림직불제 관련 질의응답	■ Dr. Frieder Hepperle (Baden-Wuerttemberg 산림부 행정실장)
11.28(금)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BMEL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 독일 연방 농업부 방문 및 산림정책 담당자 면담 ■ 독일의 전반적인 산지관리제도 산지전용 부담금, 산림경영 보조금 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 Peter Lohner (농업식품부 산림정책과)
11.29(토)	베를린	파리	-	-	-
11.30(일)	-		-	-	-
12.01(월)	파리		ONF (국립산림청)	■ 프랑스 국립산림청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프랑스의 전반적인 산림관리제도 및 현황 질의응답	■ Sylvian Leonard (농업식품부 산림정책과)
12.02(화)	보르도		CRPF (Centres Regionaux de la Propriete Forestiere)	■ 프랑스의 민간산림 관리기관인 CNPF의 Aquitaine 지방 기구인 CRPF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Aquitaine의 사유림 관리제도 및 산지전용, 산림경영 현황에 관한 질의응답	■ Roland de lary (CRPF Aquitaine 국장)
12.03(수)	보르도		-	■ 현장답사(Aquitaine 주 산림) 및 귀국	-
	보르도 (16:00)	파리 (17:20)	-		
	파리 (21:00)	-	-		
12.04(목)	인천 (15:55)		-	■ 해산	-

III. 수행사항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부 방문

○ 기관소개

-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농촌소비자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자연보호, 관광, 숲과 농업 등을 관리하는 기관임
- ForstBW는 특히 숲과 산림 관리에 특화된 농촌소비자부 산하 기관으로 지속적인 산림관리와 공공의 이익, 산림 소유주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지원 등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브랜드임
- <https://mlr.baden-wuerttemberg.de/>
<http://www.forstbw.de>



□ 일시 및 장소 : 2014. 11. 27(목)

Ministry for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Office(L557)

□ 참석자 : Dr. Frieder Hepperle(Forstrat, Referent für waldnaturschutz)

□ 주요 논의내용

■ 독일의 산림전용(산림지역 개발) 절차(3단계) - 산림법 9조3항

- “~ha의 면적을 개발하겠다”는 ‘전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전용 허가를 받고 난 후 그에 대한 3단계의 절차가 있음
- 1단계: 다른 지역에 동일한 면적의 산림 조성
 - 개인이 조성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함. 개인이 조성할 경우 특정 회사에 위탁하여 조성하게 되고, 추후 국가에서 엄격하게 심사함
 - 정부에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신청 후 토질검사를 실시하여 부과금액을 달리 조정 할 수 있음(단가가 높은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높게 부과함)
- 2단계: 산림기능 강화 관리 시행(Intensive 산림관리)
 - 1단계에 의한 대체림 조성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지역을 찾을 수 없거나 인접한 지역이 아닐 경우) 시행함
 - 산지 개발(전용)에 사용한 산림을 제외한 나머지 산림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지를

관리해야 함(잔류 산림의 기능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 1단계의 경우는 같은 비율로(1ha 전용=1ha 산림조성) 산림을 조성하는데 반해 2단계일 경우에는 1:1.1.3~1.8 의 비율로 관리해야 함

- 3단계: 벌금 시행
 - 1단계의 대체림 조성이 불가하거나, 이미 기능량이 충분히 높아서 2단계도 시행할 수 없을 때 3단계(벌금)를 시행함
 - 소실된 면적만큼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금액은 연방주에 속한 토지에 산림을 추가 조성
 - 예) 벤츠에서 산지 전용을 통해 총 240ha의 주행 시험장을 건설. 210ha는 1단계(대체림 조성)를 적용하였고 나머지 30ha는 2단계(Intensive 관리)를 시행

■ 산림경영계획 관련 프로그램

1) 컨설팅

- 개별 산지별 전담 공무원이 지정되어 무료로 컨설팅을 해줌
- 산지 소유주가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이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제공함
- 공무원 1인 당 산림지역 1,500~2,000ha 정도를 할당하여 컨설팅을 수행함

2) 대행업자 소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산림에서 시행하는 일이 개인이 하기 힘들 경우 정부에서 직접 대행업체를 소개해 주고, 이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숲을 관리하고 있는지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작업료는 개인부담임

3) 국가 vs. EU 연합 프로그램

- 각 국가별 프로그램 및 EU연합 프로그램이 있음
- 사유림 지역 등산로 개설, 기후안정화 프로그램(수종갱신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 온도 저감효과 등), 사유림의 자연공원화를 통한 산림 풍경 보존 프로그램 등이 EU와 함께 후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임
-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위한 신청 절차
 - 프로그램에 따라 1년단위, 5년단위 등 신청 시기가 다르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함
 - 정부의 컨설팅 등 지출이 없는 프로그램은 개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드는 지원프로그램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함
 -

■ 지원금 - 부록 참고(독일 산림환경보조금 번역본)

1. 지속적 산림경영

1) 조림

- 신규조림의 경우 지원금은 일괄지불로 이루어짐
- 혼작(활엽수 최소 40%)의 경우 지출비용의 70% 지원
- 활엽수경작지(활엽수 최소 80%)의 경우 지출비용의 85% 지원

기획	수혜자	자금조달
지금까지 산림경영 되지 않았던 구역을 새롭게 녹지화시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지원금은 일괄 지불로 이루어진다. 혼작(활엽수 최소 40%)의 경우 지출비용의 70%가 지원된다. 활엽수경작지 (활엽수 최소 80%)의 경우 비용의 85%가 지원된다.

2) 자연친화적 산림경영

- 혼작(활엽수 최소 40%)의 경우 지출비용의 70% 지원

기획	수혜자	자금조달
정기적 사업계획 수립 및 수정	최대 500ha 사유림의 소유자	증빙된 지출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최고 지원금은 산림청에서 규정한 비용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검사, 분석, 구역감정, 전문가의 판정 등과 같은 준비작업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증빙된 지출의 80%가 지원된다.**
지역적으로 또는 기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산림을 안정적인 산림으로 개조 및 개선(손실사건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또는 참나무와 토지보호구역(Bodenschutzwälder)의 경우 파종, 재배, 자연재생(Naturverjüngung)을 통한 안정적 산림개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지원금은 일괄 지불로 지급된다. 혼작(활엽수 최소 40%)의 경우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활엽수경작지(활엽수 최소 80%)의 경우 비용의 85%가 지원된다. 자연재생사업(활엽수 최소 40%)의 경우 비용의 85%가 지원된다.
신생지 혼합구역 및 서식처 조정, 오솔길 조성 포함	200 ha미만 산림경영면적의 개인산림소유자	지원금은 일괄 지불로 지급된다. 관리 이후로 활엽수 면적이 40% 미만일 경우 비용의 30%가 지원된다. 관리 이후로 활엽수 면적이 40% 이상일

		경우 비용의 50% 가 지원된다. 기존의 활엽수지역 보존을 보장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산림개발유형규정(WET; Waldentwicklungstypen-Richtlinie)을 따른다.
임상(林床, Bodenstreu), 토지 또는 영양상태(Nährstoffhaus halt)가 체계적으로 개선 가능한 산림의 경우 토지석회화(Bodenschutz kalkung) 실행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30 ha 미만인 산림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100%가 지원된다.** 다른 면적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90%가 지원된다.**

3)산림경영시설 지원

기획	수혜자	자금조달
산림용 소·대형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 신설, 또는 지금까지 산림도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도로 확대 또는 개축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지방공공단체가 공동 방안을 책임지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산림경영면적이 1000 ha 미만인 사업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70%가 지원된다.** 산림경영면적이 1000 ha 이상인 사업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42%가 지원된다.**
산림경영도로 손실 점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지방공공단체가 공동 방안을 책임지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산림경영면적이 1000 ha 미만인 사업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산림경영면적이 1000 ha 이상인 사업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30%가 지원된다.** 자연휴양림(Erholungswald) 의 경우 산림경영면적이 200ha 미만인 사유림의 소유자는 증빙된 지출비용의 70%를 지원 받는다.**
산림개발에 필요한 장치 및 대중교통도로망 연결시설(특히 육교, 통행로 또는 얇은 여울) 개선 및 점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지방공공단체가 공동 방안을 책임지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산림경영면적이 1000 ha 미만인 사업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산림경영면적이 1000 ha 이상인 사업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30%가 지원된다.** 자연휴양림(Erholungswald) 의 경우 산림경영면적이 200ha 미만인 사유림의 소유자는 증빙된 지출비용의 70%를 지원

		받는다.**
산림경영도로의 하수구 (특히 배수로 추가설치) 개선 및 점검, 또는 기존 도로의 손상된 배수로 개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지방공공단체가 공동 방안을 책임지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산림경영면적이 1000 ha 미만인 사업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산림경영면적이 1000 ha 이상인 사업의 경우 증빙된 지출비용의 30%가 지원된다.** 자연휴양림(Erholungswald) 의 경우 산림경영면적이 200ha 미만인 사유림의 소유자는 증빙된 지출비용의 70%를 지원 받는다.**

4) 공동산림 및 산림경영조합 지원

기획	수혜자	자금조달
산림경영조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경영대리인이 있는 자립적인 산림경영조합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산림전문인력 비용은 1 년째에 90%, 2 년째에 80% 3 년째에 70% 4 년째에 60% 5 년째에 50% 가 지원된다. 사업계획수립 비용은 90% 지원된다.** 각 산림경영조합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일 년에 최대 80, 000 유로에 달한다. 추가적인 지원금은 최소보조지침서(De-minimis-Verordnun g)에 따라 3 년 이내에 최대 20,000 유로로 제한된다.
산림경영 공동체는 산림관리조약(Waldpfle geverträge)을 통해 회원의 산림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정액지원을 받는다. 산림관리(Pflege) 자체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경영 대리인이 있는 자립적 산림사업 공동체 (Forstbetriebsgemeinsch aften)	행정비용은 매년 산림관리조약 당 100 유로가 지원된다. 교통확보의무(Verkehrssicherungspflich t) 및 산림보호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매년 관리면적의 헥타 당 10 유로가 지원된다. 각 산림경영조합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일 년에 최대 80, 000 유로에 달한다. 추가적인 지원금은 최소보조허용(De-minimis-Verordnung)

		에 따라 3 년 이내에 최대 20,000 유로로 제한된다.
산림경영 공동체는 회원사업의 목재공급을 총괄하고 초과되는 목재매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액지원(Festbetragfinanzierung)을 받는다.	경영 대리인이 있는 자립적 산림경영조합	산림경영조합을 통해 직접 판매된 목재는 입방미터 당 1 유로에서 2 유로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은 회원사업의 총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각 산림경영조합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일 년에 최대 80, 000 유로에 달한다. 추가적인 지원금은 최소보조허용(De-minimis-Verordnung)에 따라 3 년 이내에 최대 20,000 유로로 제한된다.
산림경영 공동체는 회원에게 목재시장 및 목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액지원을 받게 된다.	산림경영 공동체	지원금은 매년 회원 당 5 유로에 한하지만 홈페이지 설치와 관리 비용은 산림경영조합 당 매년 최대 1000 유로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매년 회원 당 5 유로에 한하지만 전문교육 기획 및 진행 비용은 산림경영조합 당 매년 최대 1000 유로까지 지원된다. 인쇄물, 디지털 매체 및 정보제공행사 비용은 새로 가입한 회원 당 50 유로씩 지원된다.
유럽농업기금 지침서(ELER VO =농촌권 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 제 35 조 2 항에 따른 공동산림체계 신규축 및 확대를 위한 산림경영계획(Waldbewirtschaftungsplans) 수립 및 실행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조합. 지방공공단체가 공동 방안을 책임지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증빙된 지출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지속적 산림경영 행정규정(VwV NWW)에 따르면 연방과 주 (Bund und Länder) 및 법인은 자산의 최소 25%를 앞에서 언급한 관련인 에게 제공한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사건 이후 통합된 산림보호 정책은 연방산림청이 집행할 수 있다.

**지원금은 모두 세금을 뺀 금액이다. 매상세는 지원되지 않는다.

- EU 공동 프로그램의 상황

- 유럽연합이 되면서 특정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주정부에서 기준을 먼저 제시할 수가 있음
- 예를 들어, B-W주는 산지가 많고 이런 특색이 있으니 이런 기준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okay하면 그대로 가는 것임
- 그러나 EU에서 컨트롤하는 조항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일하기가 복잡해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정부 자원이 100% 조달 가능하면 EU 프로젝트 캔슬하고 주정부만 움직이기도 함
- 지금까지 EU에서 제시한게 무의미한 경우가 없어서 단독으로 한 경우는 아직 많지 않음

■ 공익기능량 측정 및 평가

- 독일은 3개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보호기능에 수자원, 이산화, 토사유출기능이 포함
- 정화기능, 사용기능
- 보조금 지원할 때 이러한 기능을 기준으로 함
 - 예) 수자원이 중요한 지역일 경우, 산림 소유주가 다른 개발을 통한 임업 생산물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지원을 해 주게 됨

□ 관련 사진

- 업무협약의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담당자 면담

2. 독일 연방 농업부 면담

○ 기관소개(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 독일 연방 농업식품부로서 독일의 식품, 농업, 산림, 어업 및 농촌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기구임
- <http://www.bmel.de/DE>



□ 일시 및 장소 : 2014. 11. 28(금), The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office

□ 참석자 : Peter Lohner(Ministerialrat Referatsleiter)

□ 주요 논의내용

■ BMEL의 역할

- 산림법의 큰 틀을 짜고, 산림정책의 전반적인 형태를 수립함
- ‘국회에 정책을 제시 -> 투표 -> 논의 -> 정책 입안’의 절차를 거침
- 이렇게 입안된 산림정책을 각 주에 전달하고, 이것이 ‘틀’이 되어 각 주에서는 주 특성에 맞게 정책을 변경(주마다 산림 특성과 양이 다르므로)
- 특히, 정책 입안시 산림보존방법과 산림 변경시 유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중요시여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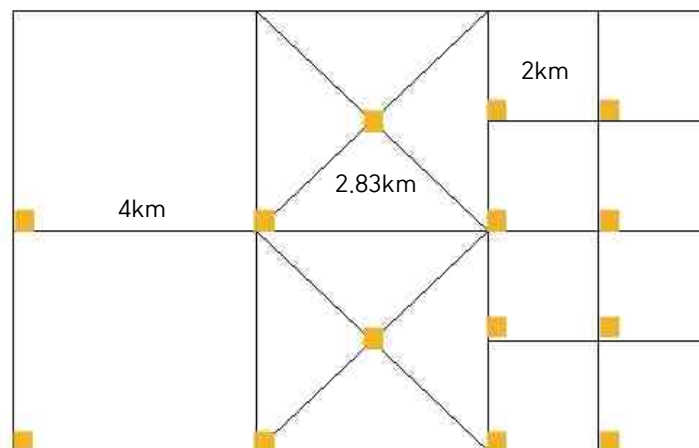
■ 산림경영보조금

- 사유림: (한국과 거의 동일함) 방치해 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안되고, 관청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보조금이 지급됨
 - 연방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큰 가이드라인을 주고, 세부적인 규칙은 주정부에서 정함
- 사유림에 대한 국가의 제한이 가해질 경우에는 그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나 감면혜택을 제공함

■ 공익기능량 측정 및 평가

- 산림에 관한 기능량 평가를 하고 있는데, 수종별 평가, 임령 평가(20살 안된 나무는 사용 가치가 없음. 20살 이상 나무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냄), 입목이 서 있는 토질 평가를 하여 평가를 함

- 평가 후 활용
 - 산지 팔 때 가장 크게 쓰이고, 보조금 받을 때는 일부분에 해당됨
 - 하지만 기능량 평가로 인해 보조금액을 크게 좌우되지는 않음
 - > 구체적 기준은 주정부에서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함
- 수목의 조사 및 데이터
 - 연방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각 주에 주지만, 각 주정부에서도 조사를 하며 연방 차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는 10년 단위로 발간함
 -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제공 정보와 자체 정보를 합쳐서 자신의 기준에 맞게 사용함
- 조사면적 단위(그림1 참고)
 - 연방주가 크거나 나무가 많이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4km마다 점을 찍어 조사를 함
 -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4km 지역 정가운데 점을 찍어 2.83km x 2.83km로 조사를 함(2배 밀도)
 - 더 자세한 조사는 2km x 2km(4배 밀도)로 조사함
 - 조사를 위한 (노란색)점의 크기는 150mx150m인데, 이 점(샘플)을 대상으로 수종을 조사하여 통계를 내고, 이 샘플을 바탕으로 평균을 내서 굵기, 크기, 임령 등을 지속적으로 추정함
 - 또한 중심이 되는 조사 지점을 정해놓고 항상 그 점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여 변화를 관찰함



[그림 1] 산림 조사면적 단위

■ 산림이용

- 336m³/ha 의 나무가 있음 (유럽의 1등 수치)
 - 매년 11.2m³/ha 의 나무가 자람
 - 121.6백만m³ 자라고 15.3백만m³은 새로 심은 나무, 7.8백만m³은 죽은 나무, 이론적으로 사용 가능한 목재는 75.7백만m³ 임
 - 연방정부에서 목재 이용 총량을 항상 관리하여 수요보다 공급이 높도록 관리함(= 지속가능한 개발)

■ 독일 전체 산지 분류

전체 산지(11,419,124ha)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산지(203,749ha)	수목이 자랄 수 있는 산지(11,215,375ha)		
	도로가 있거나 수목이 없는 산지(327,385ha)	수목이 있는 산지(10,887,990ha)	
		어린나무가 자라는 산지(40,852ha)	완벽한 산지(무성한 숲)(10,847,138ha)

□ 관련 사진



▲ 독일 연방 농업부 면담

3. 프랑스 국립산림청 면담

- 기관소개(Office National des Forêt, ONF)
 - 1964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삼림법전에 의거하여 1964년 산림부와 환경부에 동시에 소속되는 기관으로 설립
 - 2012~2016년 기간 동안 1,300개의 국유림과 15,600개의 지자체 산림(그 중 14,500의 꼬뮌 산림)을 관리함
 - <http://www.onf.fr>



□ 일시 및 장소 : 2014. 12. 1(월), ONF Office

□ 참석자 : Patrice Hirbec (Director Forêt et Risques Naturels)

□ 주요 논의내용

■ 프랑스 산림의 역사 및 현황

- 13세기부터 산림에 대한 관측을 시작했고, 지금은 산림을 계속 발전시키고 더 많이 생성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음(프랑스 땅의 30%가 산림)
- 2000년부터 약 10년 간 52,000ha가 새로 생겨남(연간)
 - 유럽 전체가 비슷한 현상 하에 있음
 - 이것은 농업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에 필요한 토지가 감소하면서 나머지 토지를 산림화 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
 - 하지만 근래 3~4년간은 증가보다는 유지하는 추세임
- 70%의 산림이 사유림이고 12%는 국유림, 18%는 공유림(지자체소유)
 - 즉, 대부분의 산림이 사유림이며 1,100만 ha가 사유림인데, 개인소유 산림은 380만 ha이며, 1인당 평균 4ha를 소유
- 문제점:사유지기 때문에 많은 소유주가 있고, 그에 따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작은 땅으로 나누어져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
-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ONF임
- 프랑스의 동부가 생산성이 높고 지중해쪽은 산림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지중해쪽 생산력이 낮은 지역이 더 넓어지고 있음
 - 100년정도가 지나면 매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프랑스의 임업 현황

- 프랑스에서 임업은 자동차 산업 정도의 규모를 차지(고용창출 측면)하고 있음
 - 매출액에서는 10%가 적지만 고용효과는 거의 동일함
- 그만큼 국가적으로 큰 산업이고, 아키텐-자롱드 지방(보르도)은 특히 임업이 발달하여 임업 조합 관련 기관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 예) CRPF(12월2일 방문, 보르도): 사유림 임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가능

■ 프랑스 산림의 문제점

- 산림의 노후화와 사유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산림정책의 3가지 역할(중요 요소)

- 공익적 기능이나 목재나 산림으로서 최대한 많은 역할(기능)을 할 수 있는 산림 만드는 것이 목표임
- 3가지 중요 요소
 - 산림 조성 늘리기(생산), 관리(보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용)

■ ONF(국립산림청)

- 1291년에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처음 생김(ONF의 시초)-물과 산림관리 조직
 - 1966년에 국립산림청(ONF)으로 명명됨
- 루이14세가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 없어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등 프랑스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산림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프랑스 혁명으로 1/5만 남기고 산림이 소실되었고, 산림법전은 1827년에 처음 수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 1900년대까지는 정부에서 산림조성을 위해 힘쓴 시기임

■ ONF의 운영 및 활동

- ONF는 프랑스 정부와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하고 활동함
- 3가지 미션이 있음(1. 공공산림의 관리 2. 공공서비스 제공 3. 서비스나 다른 건물들을 생산)
- 1~2는 정부와 계약을 통해서만 수행이 가능함(5년단위 계약에 속하며, 계약에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금 받을 수 있는지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함)
- 3번째의 경우는 정부의 계획 없이 민간기업과 함께 계획, 추진 가능함

■ 정부와 ONF의 관계

-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정부의 편당에 따라 사업의 양이 정해지고, 그 사업은 ONF에서 담당함
- ONF는 농업부장관, 환경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ONF 청장, 즉 4인의 계약에 의해 갱신됨
- 4개 기관장 모두 목적이나 자금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해 승인을 해야만 갱신 가능함
- ONF는 특정 정부부처에 속한 것이 아님
 - 행정업무는 행정부에서 지원을 함
 - 기타 산림관련 업무는 3개 부처가 협력을 하고 있음

■ 보조금

- 보조금을 주진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을 줌
 - 상속세 X, 30년간 세금을 안냄(산림토지세)
- 숲의 증가
 - 보조금이 없는데 사유림에서 숲이 증가하는 이유
 - 농업 기술의 증가로 농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토지가 생기고, 이 토지가 산림으로 변하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기 때문임
- 노후화된 산림을 대체하거나 관리하는 프로그램
 - 산림의 노후화는 프랑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서의 해결책은, 이 나무를 이용하는 것임
 - ‘생태적 전환’ 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 산지특별지원금(ISM)
 - 임도에 주로 쓰임(대부분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내려오거나 장비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사용되고 있음)
 - 나무를 가지고 내려올 때 약 30% 가량이 이 지원금에 해당됨
- 전용 시 의무
 - 산림구역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는데 거기서 개발을 하고 싶으면 지자체 장이 허가/불허를 결정함
 - 별채 후 재조림 시 세금이 없음
 - 같은 크기의 산림 재조성은 ‘지자체장이 그렇게 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지, 의무는 아님

□ 관련 사진



▲ 산림청 담당자 면담



▲ 산림청 청사

4. 국립산림재산권센터 아키텐지부 면담

- 기관소개(Le Centre national de la propriété forestière, CNPF)
 - 국립산림재산권센터는(CNPF) 산림 소유자를 위한 기관으로서 350만 산주가 가입하고 있으며 약 11만 헥타르의 산림 및 숲을 관리하고 있음 (국토의 약 20%)
 - 임업 종사자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구 및 현장 조사에 따른 조림방법 지원, 산림관리, 제품판매, 산림 또는 토지 구조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음
 - CNPF는 프랑스 전 지역에 있는 CRPF의 중앙 사무소이며, 출장에서는 프랑스 아키텐 지방 산림을 관할하고 있는 CRPF Bordeaux에 방문하였음
 - <http://www.cnpf.fr/> (CNPF)
 - <http://www.crpfauitaine.fr/> (CR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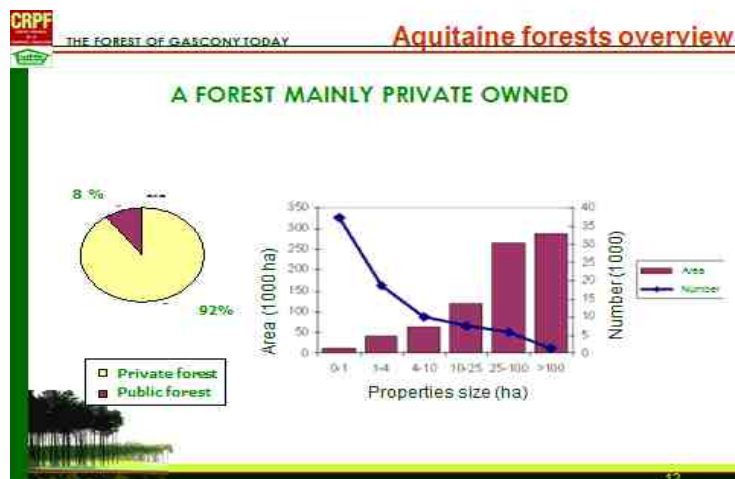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 2014. 12. 2(화), CRPF Office

□ 참석자 : Roland de LARY(Director), Jean-Quentin DUVAL(Conseiller Forestier)

□ 주요 논의내용

■ 아키텐 지방의 일반적 산림상황

- 아키텐 지역은 임업종사자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임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산림의 92%가 사유림으로 공공의 산림은 거의 없으며 그에 따라 CRPF의 역할 및 조직에서의 지원체계가 개인 소유주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있음



- 기본적인 산림조림부터 벌목까지 계획은 그림과 같음



■ 나무 심는 지원, 재원, 규모

- 아키텐 지역 전체에서 1million/year 정도 지원금이 나오며, 아키텐 밑에 5개 데빠프망이 있는데 각각 20만 유로(연간)
 - 유럽연합(EU)에서는 아키텐 주에 60 million 유로를 지원(태풍피해에 관한 지원이며 그 중 45million이 다시 심는 금액)
- 나무를 다시 심을 때 60~70%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함 (하단부 ‘산림경영지원금’ 참조)
 - 만약 1,000유로가 필요할 경우 어떤 기관이든 신청해서 비용을 받아서 직접 심을 경우 200~300유로만 들더라도 나머지 지원금은 소유주가 갖게 됨
 - 즉, 소유지는 지원금을 활용한 재정 운용에 대한 여유가 있음
 - 소유주의 직접 조림 비용과 업체 대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

■ 생산 목재 수입 및 세금

- 임업종사자가 생산하는 목재 등에 대한 이익은 100% 소유주에게 돌아감
- 임업 생산 수입에 대한 세금
 - 토지세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토지세 안에 임업 생산물 수입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
 - 30 또는 50년 기준으로 장기로 같은 금액을 매년 지불하게 됨(이미 초기에 결정됨)

- 즉, 소득 신고 후 그에 비례하는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같은 일정 금액을 토지세에 포함시켜 납부하며 자신이 판매한 매출은 신고하지 않음
- 토지세 자체는 시에서 정하는 것이며, 토지세 안에 포함된 세금은 '정액제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정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하듯이 1.xx%로 정해서 적용함
- 즉, 이런 시스템이 소유주에게 이익(+)가 되고, 나무를 재조림 할 때는 세금감면혜택이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음
- 나무 종에 따라 연차가 있긴 하지만 다시 심을 때에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음
- 결국 소유주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얻게 됨
- 임업의 산업적 특성 때문에(위험성 높고, 순환주기가 김) 최대한 임업 소유주에게 혜택이 가도록 발전해 왔음
 - 30년 뒤 소득을 내고, 그 소득을 신고하는 형태라면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 재정기금
 - 생산자들이 운용 가능한 조합에서의 재정 기금도 있고, 재정 지원하는 회사도 있음
 - 아키텐 지방에서 발전된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된 구조로 시장 구조가 안착되어 있음
- 나무 종에 따라, 어떤 지역이나에 따라 굉장히 다르며 기준이 rough함
 - 50ha 소유하고 있는데 매년 190유로 정도 세금을 냄(정액제)
 - 2년 쯤 뒤 3~4000유로를 벌게 될 경우, 매년 190유로씩 냈기 때문에 이 수입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지 않음

■ 산림 소유주의 경영계획서 작성

- 가장 베이스가 되는 지원 시스템은 '지속적 운영에 관한 인증'의 유무임
- 25헥타 이상은 PSG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 25헥타 이하는 Code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경영개발에 대한 certification 지원서가 있음
 - 필수는 아니지만 지원금을 위해서는 의무사항임
 - 계획서가 아니고 서약의 일종이고 매우 간단함
- 이러한 인증이 기본이 되어야 지원금을 신청, 받을 수 있음
- 수종, 지역 등에 대해 세분화된 도표 및 설명, 도면 작성은 필수이며, 이에 대한 운용 계획이 포함됨(10년 계획)
- 지원서는 4,900개가 있고..전부 다 했다면 11,000개가 되어야 함
 - 매년 이사회에서 심사하는 plan이 약 400개 가량 됨

- 임업자들이 선출한 이사회에서 plan의 통과 유무를 결정하고 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개진 가능함

■ 기관(CRPF)의 역할

- 기술적 자문
 - 소유주가 계획을 제출하면 현장 시찰을 통해 계획이 알맞은지에 대한 의견 및 자문을 할 수 있음
 - 특히 고려하는 사항은 제출한 산림 경영계획과 지역의 기본계획방향과의 일치성임
- 의무사항 권고
 -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신청 및 의무에 대한 사항을 잊지 않도록 remind 하는 역할도 수행함(벌금이나 다른 피해가 생기는 일에 대한 사전 방지차원)
- 기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그룹 모임(CPFA)
 - 조합활동
 -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계 구축: 사유림에서의 산림관리 및 개발 방향 모색(아키텐 지역 18개 센터 운영)



■ 산림 경영 지원금

- 아키텐 지역 내 속한 지롱드(Gironde, 수도는 보르도) 지역의 경우 아카시아와 참나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조림에 대해서는 모든 수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나, 보완작업에 대해서는 아카시아와 참나무만 가능함
- 기준표에서 제시하는 예상비용이 있으며, 지원금은 그 비용의 60%를 지원함
 - 예상 비용이 업체 위탁일 경우의 비용이기 때문에 직접 할 경우 비용이 대부분은 이보다 절감됨
- 지원금의 실질적 수혜자
 - 산림 소유주
 - 삼림의 단체/연합: GAEC (공동작업하는 농업단체), EARL (유한책임농장), SCEA (농장 민회사), SARL(유한책임회사), SA (주식회사), (AMEXA (농업자 건강보험) 가입한 농업자들이 회사 자복의 다수를 소지할 경우)
 - 주업이나 부업이나 연대 기여하는 농업자들 (Gironde도의 MSA (농업협동조합) 가입한 분)
- 경영지원금 신청인(산림 소유주)의 준수사항
 - 15년 동안 조림의 유지/보존
 - 숲의 조림은 향후 목재로 사용
 - 5년간의 유지 및 보수
 - Gironde지역 산림 개발 단체에 가입 (남쪽 지롱드, 메독, GIPA-포플라를 위한 업종간 연합)
 - 지속적인 관리나 (PSG: 관리에 대한 간단한 계획, CBPS: 좋은 임업의 관행에 대한 규칙, RTG:관리형의 규정) 증명을 (PEFC: pan european forest certification,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하도록 약속
- 자금 지원을 위한 조건
 - 1) 준수사항
 - 조세 및 사회복지를 위한 의무를 다 함
 - 토지 관련 정부원조를 받지 않음
 - 커뮤니티 규정인 “경제적인 최소한 허용” (규정 CE1998/2006)에 따라서 3년 동안 정부 원조를 20만 유로 이상 받은 적이 없음

2) 면적/구역의 조건

- 모든 프로젝트들 안에 최소 4ha의 우거진 지역을 포함해야 함(예외: 아카시아와 호두나무는 2ha부터 가능)
- 제출한 프로젝트들의 최소한 면적을 1ha로 해야 함(예외: 호두나무는 0.5ha)
- 한 프로젝트가 같은 지역 안에 최소 0.4ha 측량한 여러 소구역을 구성될 수 있음
- 아카시아 나무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의 최고 면적은 4ha로 정해져 있음

3) 지원금에 대한 조건

- 조림과 보원활동의 지원금액은 3년 동안 18,000유로를 넘지 못하며 200유로는 모든 세금 포함된 최소 금액임

• 진행 및 실행 절차

-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 CRPF의 관리자(기술자)가 신청서를 확인하고, Gironde 도 의회와 Aquitaine 지방의회에 전송하고 GPF(산림생산성단체)와 협력
- 3) 신청인이 도 의회와 지방의회에게서 수령공문을 받기 전까지 그 어떤 작업도 시행할 수 없으며, 이 수령공문이 지원금의 지급 가/불가를 보장하지 않음
- 4) 신청서가 통과하면 신청자는 각각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에서 명시하는 지원 가능한 권리를 부여받고
- 5) 작업이 완료되면 담당자는 토지에서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실시하고 실행 증명서를 발급함
- 6) 실행된 작업의 면적 및 설명과 함께 소유주와 개발조직의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증서를 제시하면 지원금 전체를 일시불로 지급함
 - 필요서류: 신분증, 실행 증명서 및 지원신청서, 계좌명세서, 토지대장, 토지대장의 도면(GPS데이터), 위치 지도, 지속적 관리를 약속하는 증명서 등

[표 1] 면적과 총액 조건의 요점 일람표

	요구한 면적			지급된 총액		
종류	아카시아	호두나무	기타	아카시아	호두나무	기타
제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	1ha부터	0.5~4ha 까지	1 ~ 4 h a 까지	20EUR ~ 18,000EUR 까지		
프로젝트를 구성한 소구역	소구역마다 최소 4ha					
최소 지역 크기	2ha		4ha			

- 지원금

- 보조금 비율: 작업총액/공사비용을 60%로 지원할 수 있음(30%는 Gironde주 의회, 30%는 Aquitaine지방 의회)
- 공사비용의 평가는 견적이나 신청서의 기준표에 따라 정해짐

[표 2] 지원총액 일람표

단위: €/ha

		기준(예상)금 액(€/ha)	지원금:60% (30% 도의회, 30%지방의회)
신규 조성	아카시아 나무 조림		
	C1	목재를 위한 조림(cf A1 또는 A2 참여)	1,500
	C2	바이오매스를 위한 조림	2,300
	C3	목재나 바이오매스를 위해 농지에 파종	800
	조림(아카시아 제외)		
	B1	소나무	1,500
	B2	삼나무	1,500
	B3	참나무	2,000
	B5	호두나무	1,350
	B6	기타 활엽수	1,600
	동물로부터 보호		
	P1	소나무	2,400
	P2	삼나무	1,800
	P3	참나무	3,000
	P5	호두나무	300
	P6	기타 활엽수	1,800
	P8	토끼로부터 보호(모든 종류)	1,500
	P7	아카시아 보호(노루, 사슴)	3,000
개량/ 향상/ 개발	아카시아 나무의 개발/향상		
	A1	식목/심기의 전지	400
	A2	짧은 가지치기	450
	A3	가지치기- 5m 높이 400 줄기/ha`	600
	A4	숙아내기/첫번째 간벌	1,000
	A5	분쇄/으스러뜨림 (짧은 벌목 후)	200
	A6	아카시아나무 정비(그루 당)	1,500
	A7-1	출입구, 통로 등 경계선 작업	100
	A7-2	제초기로 경계선 작업	300

	참나무 조림			
	AB10	간벌 시 남겨두는 12m 이하 묘목	1,000	600
	AB11	간벌 시 남겨두는 12m 초과 묘목	270	162
	AE12	5.5m 높이에서 가지치기(활엽수)	760	456
	ADEP	숙아내기	700	420
	참나무 조림의 전환이나 변환			
	C10	참나무의 자연 재생	610	366

- 각 종에 대하여 초기 최저 밀도와 작업 5년 후 최저 밀도를 요구함

종류	초기 (밀도/ha)	5 년후 (밀도/ha)
소나무	1,000	800
삼나무	800	600
참나무	1,250	1,000
호두나무	100	100
기타 활엽수	800	600

■ 전용사업

- 똑같은 면적 규모의 나무를 다른 곳에 심거나(본인 부담)

■ 벌금

[불법 개간의 벌금 요점 일람표]

a)일반/보통 불법 개간	
10m ² 이하 되는 면적	10m ² 상당 또는 그이상의 면적
벌금 없음, 처벌 없음	150€/m ²
b)보존 비축의 개간	
10m ² 이하 되는 면적	10m ² 상당 또는 그이상의 면적
벌금 3,750€	450€/m ²
c)삼림/숲보호 지역의 개간	
10m ² 이하 되는 면적	10m ² 상당 또는 그이상의 면적
벌금 1,500€	300€/m ²
d)중단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행	
10m ² 이하 되는 면적	10m ² 상당 또는 그이상의 면적
벌금 3,750€	450€/m ²

- 규정/법정에 따라서 10m² 이상의 불법 개간들이 모두 범죄행위임
- 개간 할 때부터 6년까지 법으로 규정
- 불법 개간 기록하는 조서가 공사 중단과 공사 재료와 설비 물수를 명할 수 있음
- 조서에도 불구하고 공사 속행하면 위반한 사람이 6 개월 징역형을 받아야 함
- 개간한 곳들을 숲으로 복구시켜야 함

□ 관련 사진





▲ 아키텐(지롱드) 지방 산림 답사

Notice du Programme de diversification en Gironde

Objet :

Soutien à la diversification des peuplements forestiers en Gironde, priorité donnée à la création et à l'amélioration du Robinier.

Travaux éligibles :

Les essences privilégiées sont le Robinier et le Chêne pour lesquels tous les barèmes sont éligibles. En ce qui concerne les autres essences sont seulement éligibles les opérations de créations.

Bénéficiaires :

- propriétaires forestiers,
- groupements forestiers, GAEC, EARL, SCEA, SARL, SA (lorsque la majorité du capital social est détenue par des exploitants agricoles bénéficiaires de l'AMEXA),
- exploitants agricoles à titre principal, secondaire ou cotisants solidaires (affiliés à la MSA de la Gironde).

Engagements du demandeur :

- maintien du peuplement pendant 15 ans,
- engagement à conduire le peuplement dans un objectif Bois d'œuvre (ou Bois Energie pour le Robinier).
- entretien du peuplement pendant 5 ans,
- adhésion à un Groupement de Développement Forestier de Gironde (Sud Gironde, Médoc, GIPA),
- engagement dans une démarche de gestion durable (PSG, CBPS, RTG) ou de certification (PEFC, FSC).

Conditions d'attribution des aides :

- Le demandeur doit certifier sur l'honneur :
 - être à jour de ses obligations fiscales et sociales,
 - ne pas bénéficier pour les parcelles concernées d'aides publiques.
 - ne pas avoir perçu (y compris l'aide sollicitée par ce dossier) pendant les 3 années qui précèdent plus de 200 000 euros d'aides publiques relevant du règlement communautaire «de minimis économique» (règlement CE n° 1998/2006),
- Conditions de surface :
 - Chaque projet devra s'inscrire dans un massif boisé de 4 ha au minimum (sauf pour le Robinier et le Noyer où 2 ha suffisent).
 - La surface minimum de chaque projet déposé est de 1 ha (sauf pour le Noyer pour lequel 0,5 ha suffise).
 - Ce projet peut-être constitué de plusieurs îlots de 0,4 ha au minimum dans un même massif.
 - La surface maximale pour chaque projet est fixé à 4 ha par barème, sauf pour le Robinier.

IV. 부록

- ☐ 자료1_ 독일 산지법 (11. 27(목), MLR에서 취득)
- ☐ 자료2_ 산림환경보조금 (11. 27(목), MLR에서 취득)
- ☐ 자료3_ 독일 연방주 산림총괄 프레젠테이션 자료 (11. 28(목), BMEL에서 취득)
- ☐ 자료4_ Forests and Wood of Aquitaine PPT 자료 (12. 2(화), CRPF에서 취득)
- ☐ 자료5_ 지룽드 지역의 산림다양화 프로그램 기준(12. 2(화), CRPF에서 취득)
- ☐ 자료6_ 농촌 및 숲의 방향(벌금관련) (12. 2(화), CRPF에서 취득)
- ☐ 자료7_ (25ha 이하 산림대상_권장제출)임업관행 지침(12. 2(화), CRPF에서 취득)
- ☐ 자료8_ (25ha 이상 산림대상_필수제출) (12. 2(화), CRPF에서 취득)